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양도에 관한 연구

-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 세 훈* 최 영 주**

- I. 서 론
- Ⅱ. 신용장양도의 일반적 고찰
- Ⅲ. 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양도조항의 검토
- IV.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과의 비교 및 평가
- Ⅴ. 결 론

주제어 : 신용장양도, 양도가능신용장, 보증신용장양도, 지급청구권 양도

I. 서 론

신용장은 격지자간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초의 신용장 수익자인 제1수익자가 실제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석박통합과정 수료(교신저자)

생산자가 아닌 경우 또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장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신용장은 국제상거래의 필요에 의해 발달한 특수한 수단이기에 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배서를 통해 유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당사자간합의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계약법하에서의 채권양도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본 고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양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38조를 고찰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신용장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 (ISP98)과 비교 및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양자 모두 신용장이므로 동일한 법리에 의해 규율되고, 보증신용장거래의 준거규칙으로서 UCP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둘을 비교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대금결제시 양도가능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의 연구범위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양도관련 규정인 제38조와 비교대상인 보증신용장통일규칙 ISP98의 지급청구권양도(Transfer of drawing rights)²⁾에 해당하는 제6.01조부터 제6.05조까지를 그 범위로 하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한다.

신용장양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심영수의 연구(1987)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약10여 편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로는 양도규정의 변천과 UCP500상의 문제점을 다룬 이상훈의 연구(2006)와 UCP400과 UCP500의 양도규정을 비교하여 개정된 후 양도규정의 변화를 분석한 전순환의 연구(2004), UCP500의 양도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서백현의 연구(2004), 미국통일상법전(UCC)과의 비교를 통하여 신용장양도를 고찰한 김기선·김영훈의 연구(2005), 은행의 비밀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례를 분석(2006)하고, 신용장양도에 따른 계약관계를 분석한 한재필의 연구(2007)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신용장양도에 관한 문제점과 사례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반해, 본 고는 UCP600의 신용장양도조항과 최근 그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보증신용장(Standby L/C)의 통일규칙인 ISP98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의 양도조항과의 비교를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문들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²⁾ 지급청구권의 양도는 보증신용장양도와 동의어로서, 이하에서는 '보증신용장양도'로 칭한다.

Ⅱ. 신용장양도의 일반적 고찰

1. 신용장양도의 의의

신용장양도(transfer)3)란 신용장상 원수익자(제1수익자)가 자신이 갖는 권리 및 의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3자(제2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양 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 자체가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 고 있는 신용장을 지칭한다.4)

신용장양도는 제2수익자에게는 양도를 통해 환어음과 서류를 제시하고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는 이점을 주는 반면, 원신용장상 개설의뢰인(매수인)에게는 자신과 거래관계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제3자(제2수익자)의 물품을 수취하 게 되는 위험을 넘겨받게 되는 단점을 주게 된다.

실무적으로 신용장양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첫째, 신용장의 원수익자가 자격 있는 무역업자가 아닌 경우. 둘째. 자가생산시설이 없는 수익 자가 수출화물을 직접 집화하여 선적할 수 없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셋째, 여러 명의 수출자로부터 소량의 다종 물품 수입시 여러 개의 신용장을 발행하는 대신에 수출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사나 대리점 앞으로 신 용장을 일괄하여 개설하고 지사나 대리점이 각 수출자에게 당해 신용장을 양 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넷째, 엄격한 수출쿼터(export quota)가 적용되는 물 품에 대하여 신용장의 수익자가 자기에게 할당된 쿼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다섯째. 양도차익의 취득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양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기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등5)과 같은 이유로 행해 지고 있다.

³⁾ 신용장을 양도하려면 신용장상에 반드시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대금의 양도를 의미하는 'assignable'과 구별되어 사용하여야 한다. 대금의 양도는 신용장 대금에 대한 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신용장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 는 문구가 없어도 가능하고 선적과 서류작성의 의무는 여전히 원수익자에게 그대로 남는 다.

⁴⁾ UCP600 제38조 (b)항 참조.

⁵⁾ 우성구, "UCP에 의거한 신용장양도원칙의 실무적용사례", 「산업경영」제22권, 경남대학 교 산업경영연구소, 1998, p.187.

2. 신용장양도의 법적성질

신용장양도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크게 대륙법계 학설과 영미법계의 학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신용장양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요구가점차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양도조항이 개정되어감에 따라 신용장양도가 기존의 일반적인 계약법하에서의 채권양도의 법리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대륙법계 학설로는 채권양도설, 추상적 채무약속설, 제2의 신용장개설설, 신용장분할설, 조건변경수권설, 수익자지위의 양도설이 있고, 영미법계의학설로는 채권양도설, 경개설, 복합설 등이 존재하며, 주요 학설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양도설

채권양도설은 신용장을 채권으로 간주하여 신용장양도를 채권의 양도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신용장양도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1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채권을 제3자(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로 구성하여, 소정의 지명채권양도방법 및 효력에 의해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제1수익자는 채무자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양도를 통지하기만 하면 되고 개설은행은 제1수익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서 제2수익자에게 대항할 수있으므로, 신용장계약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는 물론이고 개설은행이원수익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에 의하여 대항할 수 있다.6

2) 추상적 채무약속설

추상적 채무약속설은 독일의 다수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장양도가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제1수익자의 신청에 의해 제2수익자(통상 물품공급자)를 위한 신용장이 새롭게 개설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보면 제3자와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제2수익자에 대한

⁶⁾ Wilber Ward & Henry Harfield,, *Bank Credit and Acceptance*, 4th ed, New York ; Ronald Press, 1958, p.129.

은행의 양도표시를 독일 민법 제780조기에 규정된 추상적 채무약속으로 보아 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신용장의 개설은행과 제2수익자와의 관계를 독일 민법 제780조상 소정의 채무약속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채무 약속은 원인햇 위와 분리된 약인의 추상적인 채무를 부담하다고 해서 추상적 채무약속설이라 한다. 부연하자면 제2수익자의 지위는 원수익자의 법률상 지위와는 별개의 독 립된 것이고 따라서 제2수익자는 이 추상적 채무약속에 의하여 신용장상 의무 가 있는 은행 즉 개설은행과 경우에 따라서 확인은행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급 청구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과 최초의 원수 익자간의 관계에서 가지는 은행의 항변으로써 제2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8)

3) 제2의 신용장개설설

제2의 신용장개설설은 신용장양도를 통한 제2수익자의 권리가 제1수익자와 의 계약으로부터 직접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개설은행과 제1수익자간의 새로운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보면 신용장양도가 새로운 신용장의 개설이라 는 견해이다. 이때 제1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의 역할을 맡게 되다는 주장이다. 부연하자면 신용장양도는 제1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이 되고, 제2수익자를 수익 자로 하는 제2의 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제2수익자의 지위는 제1수익자의 법률상 지위와는 별개로 독립되고, 그러므로 제2수익자는 개설은행(혹은 확인은행)이 제1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 대항받 지 않게 된다. 따라서 양도된 신용장은 일반적인 신용장과 다르지 않고 제2수 익자에게는 원신용장과 구별되는 청구권이 있는 한 개의 신용장이 되므로. 이 를 제2수익자에 대해 개설은행이 새로운 지급확약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 설이다.

⁷⁾ 어떤 계약이 독립하여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방식 에 관하여 별단의 방식이 정하여지지 않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독일 민법 제780

⁸⁾ 김영준, "신용장양도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58.

4) 경개(novation)설

경개설은 주로 미국에서 지지하는 학설⁹⁾로, 신용장양도를 계약관계의 경개 (novation)¹⁰⁾로 보고 제2수익자가 제1수익자를 대신하여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는 견해이다.¹¹⁾ 부연하자면 신용장양도는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의 약정 외에도 제2수익자와 개설은행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제1수익자(매도인)는 구채무자로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제2수익자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된다.

영미의 보통법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계약당사자에게만 미치며 계약당사자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의 양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계약에 의한 채권·채무를 모두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통증권과 같은 채권의 양도는 인정하지만 기타의 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교체에 의한 계약의 경개만 허용12)하기 때문에 신용장양도 또한 경개로 해석한다.13)

그러나 이 학설은 신용장양도 이후에도 제1수익자가 거래당사자로 여전히 존재함을 간과하고 있다¹⁴⁾는 비판도 받고 있다.

⁹⁾ Boris Kozolchyk, Commercial Letter of Credit in America, Matthew Bender, New York, 1976, p.498; Meb Export Co. Inc. v. National Bank of New York, 131NYLJ 4., 1954.

¹⁰⁾ 경개란 기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거나 원계약 당사자를 새로운 계약당사자로 바꾸는 동시에 현존하는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계약의 원당사자 중에서 일 방당사자를 대신하여 새로운 당사자로 대체하고 새로운 당사가 교체된 당사자의 원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계약의 관계당사자가 이 교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되면 새로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Thomson/west, 2004, p.1094).;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500조).

¹¹⁾ American Law Institute, Uniform Commercial Code, Revised Article 5 Letter of Credits, 1995, Article 5–112, Official Comment.

¹²⁾ 김영준, 전게논문, p.69.

¹³⁾ Schmitthoff, Clive M., The Sources of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teven & Sons, 1964, p.229.; A.G. Davis,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 of Credit, 3rd, ed., Pitman, 1963. p.112.; D.M. Day,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Butterworth 1981. p.152–154.; Gutterridge and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6th ed., Europa Publication Ltde. 1979, p.163.

Ⅲ. 신용장통일규칙상 양도조항의 검토

신용장양도의 허용

1) 양도가능 문구의 명시

신용장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UCP600 제38조 (b)항에 따라 신용장상에 반 드시 '양도가능(transferable)'이란 문언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 외에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transmissible'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거나 양도에 관하여 기재되지 않은 신용장은 양도불능신용장으로 간주되다. 이러한 용어들 은 신용장의 대금양도15)에 사용되거나 분할선적으로 오역될 가능성이 있어 사 용이 금지되고 있다.

2) 양도은행의 의무

개설은행을 포함한 양도은행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승낙하는 범위와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다.16) 또한 제1수익자는 원신용장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요청을 할 수 없고. 양도은행은 이를 벗어난 양도요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17)

3) 분할양도의 허용 여부

UCP600 제38조 (d)항¹⁸⁾에서는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

¹⁴⁾ Peter Ellinger,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p.286

¹⁵⁾ 대금의 양도(assignment of proceeds)란, 수익자가 첫째, 신용장조건을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보하면서, 그 이행에 앞서 둘째, 대금의 청구권만을 다른 양수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양수인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을 모두 완수하였을 때 비로소 은행으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서정두, "신용장분쟁사례", 청목출판사, 2009. p.239).

¹⁶⁾ UCP600 제38조 (a)항.

¹⁷⁾ ICC Pub. 489, Case No. 284

¹⁸⁾ A credit may be transferred in part to more than one second beneficiary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are allowed. A transferred credit cannot be transferred at the request of a second beneficiary to any subsequent beneficiary. The first

신용장은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CP600 제31조 (a)항19)에서 분할청구와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분할청구와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신용장은 두 사람이상에게 분할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20) 그러므로 분할선적이나 분할청구 즉, 분할어음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제1수익자는 분할양도가 아닌전액양도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할양도 되는 총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양도의 허용 횟수

신용장양도는 UCP600 제38조 (d)항에 의해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양도 횟수는 단 1회만 허용된다. 따라서 신용장은 1단계 양도되면, 제2수익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후속되는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될 수 없다. 단, 제1수익자는 후속되는 수익자로 보지 아니한다. 즉, 제2수익자는 양도된 신용장을 제1수익자에게 반납할 수 있다.²¹⁾

신용장을 제2수익자가 제1수익자에게 반환양도(transfer back)²²⁾한 경우, 이는 신용장양도의 철회로 간주되어 제3자에게 재양도(retransfer)할 수 있으며, 이는 1회 양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을 반화받

beneficiary is not considered to be subsequent beneficiary.

¹⁹⁾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are allowed.

^{20) &#}x27;원수익자 앞으로 발행된 미화 100,000달러라면 그 중 미화 50,000달러는 제1수익자가 이행하고 나머지 미화 50,000달러는 제2수익자인 A에게 양도하거나 제1수익자가 받은 금액 미화 100,000달러 중에서 제2수익자인 A에게 미화 50,000달러, B에게 미화 30,000달러, C에게 미화 20,000달러를 각각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A,B,C 는 제2,제3,제4수익자가 아니고 모두 제2수익자로 간주되며 모두 1회 양도로 보는 것이다'즉신용장양도로 신용장통일규칙의 양도하용 횟수 제한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A,B,C가모두 원수익자로부터 직접 신용장을 접수하여 복수의 제2수익자로 간주되므로 신용장통일 규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강원진,「신용장론」,박영사, 2007. p.162).

²¹⁾ 서정두, 전계서, p.235.

²²⁾ 신용장을 양도받은 제2수익자가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다시 제1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2수익자가 다른 제3자를 제3수익자로 하여 재양도(retransfer)하는 경우와 구별하여 특히 반환양도(transfer back)라고 하기도 한다(이상훈, "신용장양도에 있어서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제21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p.77).

은 제1수익자는 원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하여 다 른 제2수익자에게 재양도를 요청할 수 있다.23)

다만 실무적으로 신용장이 2회 이상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원신용장에 'Transferred credit may also be transferred.'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양도은행이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24)

5) 양도 비용의 부담

UCP600에서는 양도와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수수료(요금, 보수, 경비 또는 비용 등)는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수익자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5) 신용장양도의 실행에 있어서 양도비용의 지급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실행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제1수익자의 양도요청이 있다하더라 도 양도비용이 지급되기 이전에는 양도은행은 양도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 다.26) 이러한 양도비용을 제1수익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제2수익자와 직접 적인 계약관계에 없는 양도은행을 보호하기 위함이다.27)

2. 원신용장의 조건 수정제한

양도가능신용장은 주로 신용장양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 간상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UCP600 제38조 (g)항²⁸⁾에 따라 몇 가

²³⁾ ICC Pub. 489. Case No.288.

²⁴⁾ Pub. 697, R. 651.

²⁵⁾ 제38조 c항. Unless otherwise agreed at the time of transfer, all charges (such as commissions, fees, costs or expenses) incurred in respect of a transfer must be paid by the first beneficiary.

²⁶⁾ 이상훈, 전게논문, p.77.

²⁷⁾ ICC Pub. 680, p.160.

²⁸⁾ The transferred credit must accurately refle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including confirmation, if any, with the exception of: the amount of the credit, any unit price stated therein, the expiry date, the period for presentation, or the latest shipment date or given period for shipment, any of all of which maybe reduced or curtailed.

The percentage for which insurance cover must be effected may be increased to provide the amount of cover stipulated in the credit or these articles.

지 조건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장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신용장양도시 원신용장상 금액 및 단가를 그대로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자기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수익자에게는 물론 수입업자인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도 자신의수출가격을 노출시키게 되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이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1수익자에게 원신용장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나 단가보다 적거나 낮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²⁹⁾

2) 신용장의 유효기일, 선적기일과 서류제시 최종일의 단축

원신용장의 금액이나 단가보다 감액되어 양도된 경우, 제1수익자는 송장을 대체하거나 어음을 추가 발행하는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수익자의 서류제시와 원신용장의 유효기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단축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적기일과서류제시의 최종일도 동일한 목적으로 단축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0)

3) 부보비율의 증가

UCP600에서는 제28조 (f)항31)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CIF 또는 CIP의

The name of the first beneficiary may be substituted for that of the applicant in the

If the name of the applicant is specifically required by the credit to appear in any document other than the invoice, such requirement must be reflected in the transferred credit.

²⁹⁾ 우성구, 전게논문, p.190.

³⁰⁾ UCP600 제38조 (g)항

³¹⁾ 신용장에 부보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부보금액은 최소한 물품의 CIF 또는 CIP 가액의 110%가 되어야 한다. 서류로부터 CIF 또는 CIP 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부보금액의 범위는 요구된 결제(honor) 또는 매입 금액 또는 송장에 나타난 물품에 대

110%로 부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2) 그러나 신용장이 양도될 경우에 부보비율이 변경 불가하다면 원신용장의 부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지급이 거절되므로, 보험부보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는 신용장양도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4) 개설의뢰인의 명의 대체

신용장상 필요서류에는 개설의뢰인의 명의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 용장양도시에는 개설의뢰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되다. 이는 개설의뢰인의 명의가 제2수익자에게 노출되어 신용장양도 이 후에 제1수익자를 배제하고 두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 다. 그러나 송장을 제외한 다른 서류에 개설의뢰인의 이름이 보일 것을 특정 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양도된 신용장에도 반영되어야 한다33)고 규정하고 있어 제2수익자에게 개설의뢰인의 명의가 노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3. 송장 및 화어음의 대체

UCP600에서는 송장 및 환어음의 대체권³⁴⁾에 관하여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서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수익자의 송장 및 환 어음을 자신의 송장과 환어음으로 대체할 권리를 가지고, 그러한 대체를 하는 경우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용장 하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5)36)

한 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³²⁾ 이전의 신용장양도에서는 부보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양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기에 제4차 개정에서 원신용장의 부보금액만큼 양도금액의 부보비율을 증가시 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Chapman, Jr., Cornelius J., "The 1983 Revision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George Washing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1995, p.17).

³³⁾ UCP600 제38조 (f)항.

³⁴⁾ 이는 중간상인 제1수익자가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설의뢰인의 신분과 원신용장 금액을 제2수익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중개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송장 및 환어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제2수익자의 송장 및 환어 음을 양도차액이 포함된 자신의 송장 및 화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둘째, 송장은 대체하지 않고 화어음만 대체하거나 셋째. 송장과 화어음의 대체시에 제1수익 자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만 별도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37)

그러나 제1수익자가 자신의 송장과 환어음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최초의 요구시38)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1수익자가 제시한 송장이 제2수익자 가 제시한 서류에는 없었던 하자를 발생시키고 제1수익자가 최초의 요구에서 이를 정정하지 못한 경우. 양도은행은 제1수익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없 이 제2수익자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39)고 규정하고 있다.

4. 양도의 조건변경 통지 및 승낙

1) 양도의 조건변경 통지

UCP600에서는 양도의 조건변경 통지40)에 관하여 모든 양도 요청은 제2수 익자에게 조건변경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조

³⁵⁾ UCP600 제38조 (h)항.

³⁶⁾ 이는 제1수익자의 임의사항으로, 환어음만 제1수익자의 것으로 대체하고 송장은 제2수익자 의 것으로 제시하거나(ICC Pub. 459. Case No. 157.) 개설의뢰인의 명의가 없는 송장. 송장 번호나 다른 서류상의 화주와 발행인이 불일치한 송장, 금액이 신용장보다 낮은 송장 등은 여타의 기재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한 하자가 되지 않는다(서정두, 전계서, p.297).

³⁷⁾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울출판사, 2007. p.331.

³⁸⁾ 여기서 '최초의 요구시(on first demand)'란 지정은행에 의하여 요구된 최초의 요구를 말한다. 즉, 제1수익자에게는 서류의 수령후 제5은행영업일이 허용되면서 동시에 제2수 익자에게도 결제를 위한 동일한 기간이 허용된다(서정두, 전게서, p.297)

³⁹⁾ UCP600 제38조 (i)항.

⁴⁰⁾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제2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데는 직접통지방법과 경유통지방법 2 가지가 있다. 직접통지방법은 양도은행이 제2수익자에게 직접 조건변경사항을 통지하는 것 이고, 경유통지방법은 양도은행이 조건변경사항을 제1수익자에게 통지하면 제1수익자가 다 시 이를 제2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1수익자는 양도의뢰시 또는 양도하기 전 에 양도은행에 직접통지방법과 경유통지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동의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양도조항에 관한 고찰", 「창업 정보학회지, 제7권 제2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4, p.250).

건변경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양도된 신용장은 그러한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41) 규정하고 있다. 즉. 제1수익자는 신용 장의 변경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할 직접당사자이다. 만약 제2수익자의 요 구에 따라 조건변경이 있을 경우. 제1수익자는 스스로 동의권하을 포기할 것 인지의 여부를 양도요청서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42)

2) 양도의 조건변경 효력의 분리

UCP600 제38조 (f)항에서는 신용장이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 되면, 1인 또는 2인 이상의 제2수익자가 조건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양도된 신 용장의 조건이 변경되어지는 다른 제2수익자에 의한 승낙은 무효화되지 않는 다. 조건변경을 거부한 제2수익자에 대하여는 양도된 신용장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하나의 신용장이 다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된 경우, 신용장의 변경을 양도받은 일부 양수인이 거절해도, 이를 승 낙한 다른 양수인에 대하여는 변경된 신용장이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두 사 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된 신용장은 분할양도된 각각 별개의 신용장이 되므로 분할양도받은 양수인은 그 분할분의 범위내에서만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43)

Ⅳ.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과의 비교 및 평가

1. 보증신용장통일규칙상 양도조항의 검토

- 1) 보증신용장양도의 요건
- (1) 양도가능 문언의 명시

ISP98에서는 별도로 보증신용장양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⁴¹⁾ UCP600 제38조 (e)항.

⁴²⁾ 서정두, 전게서, p.235.

⁴³⁾ ICC Pub. 459, Case No. 156.

않지만, 제6.01조에서 '수익자가 개설인이나 지정인44)에게 제3자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제3자가 수익자인 것과 같이 결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규정 함으로써 보증신용장양도를 수익자가 자신의 지급청구권을 제3자인 양수수익 자(혹은 제2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보증신용장양도는 양도가능보증신용장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보증신용 장통일규칙상 지급청구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보증신용장을 지칭한다. 따 라서 반드시 'transferable'이라는 문언을 표시하여 그 양도가능성을 명시하여 야 한다. 보증신용장은 양도가능(transferable)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양 도될 수 없음45)이 원칙이다.46)

(2) 보증신용장양도의 허용 횟수 및 분할양도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보증신용장의 양도가 허용되는 횟수에 관하여 제 6.02조 (b)항 (i)호에서 '지급청구권은 2회 이상 양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을 양도받은 제2수익자가 제3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동 보증신용장을 제4수익자 혹은 제5수익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전 양도(轉讓渡)⁴⁷⁾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또한 제6.02조 (b)항 (ii)호에서는 일 부양도는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양도가 심각한 문제 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양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보증신용장계의 경 험을 반영한 것이다.48) 따라서 일부양도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

⁴⁴⁾ ISP98은 보증신용장을 개설 또는 확인하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개설인(issuer)이나 확 인인(confirmer)라고 함으로써, 은행이 아닌 자도 보증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음을 명확 히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와 같은 비은행이 보증신용장을 많이 개설 하고 있는 현실이다(김중년, "보증신용장거래에 대한 준거규칙으로서의 ISP98에 관한 연 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41).

⁴⁵⁾ ISP98 제6.02조 (a)항 참조.

⁴⁶⁾ 보증신용장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단순한 서류제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양도를 허용함에 따라 개설의뢰인에게 초래되는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개설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보증신용장에서 제시되는 서류가 다른 사람이 아 닌 원래의 수익자에 의해 발행·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야 할 것 이다(대한상공회의소, 「ISP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 2008, p.180).

⁴⁷⁾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양도한 후, 제2수익자가 다시 제3의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⁴⁸⁾ 대한상공회의소, 상게서, p.181.

증신용장을 개설할 때 그와 같은 취지의 문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보증신용장양도의 개설인 또는 지정인의 동의

먼저 보증신용장양도의 절차를 간략하게 언급해보면 보증신용장의 원수익자 (제1수익자)가 일단 개설인(또는 확인인) 내지 지정인에게 양도요청을 먼저 한 후. 그러한 요청에 대해 개설인(또는 확인인) 내지 지정인이 양도동의를 하면 비로소 양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양도의 실행을 통해 보증신용장양도가 발효하면. 그 양수인은 제2수익자가 되어 제1수익자의 권리를 승계 받아 수익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 는 새로운 수익자가 되고, 제1수익자는 지급청구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증신 용장양도는 권리주체가 바뀌게 되므로 ISP98 제6.02조 제(b)항 (iii)호에서는 개설인이나 지정인이 양도요청에 동의하고 반드시 그 양도를 실행하여야 보증 신용장이 양도되고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9) 더욱이 수익자의 양 도요청의 상대방으로서 양도동의권자는 엄격히 제한되는바. 수익자는 오직 개 설인(확인인 포함)이나 '보증신용장에 특정된 지정인'에 양도요청을 하여야 하 고. 또한 오직 그러한 개설인(확인인 포함)이나 '보증신용장에 특정된 지정인' 으로부터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50)

한편 개설인, 확인인 내지 지정인은 보증신용장양도에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다.

2) 보증신용장양도 실행상의 조건

ISP98은 제6.03조51)에서 '양도가능보증신용장의 개설인이나 지정인은 다음

⁴⁹⁾ 그러므로 수익자의 양도요청은 단지 양도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여, 수익자가 양도를 요청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제1수 익자와 제2수익자(양도인과 양수인)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⁵⁰⁾ 대한상공회의소, 상게서, pp.181-182 참조.

⁵¹⁾ ISP98 제6.03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 issuer of a transferable standby or a nominated person need not effect a transfer unless: (a) it is satisfied as to the existence and authenticity of the original standby; and (b) the beneficiary submit or fulfills : (i) a request in a form acceptable to the issuer or nominated person including the effective date of the transfer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ii) the original standby; (iii) verification of the signature of the person signing for the beneficiary; (iv)

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양도를 실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설인이 나 지정인이 양도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수익자에 대한 양도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도조건에 대한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a 항에서는 보증신용장양도시에 사기행위가 개입될 수 있음을 배제토록 하기 위 해 개설인이나 지정인이 양도요청을 수락하여 실행하기 전에 보증신용장 원본 의 존재를 확인 및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2) 그리고 제b항에서는 형식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수익자가 제출하거 나 이행해야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개설인이나 지정인은 양도의 실행일과 양수수익자의 이름 또는 주소가 적혀있는 자신이 수락가능한 형식의 양도요청 서를 요청할 수 있고53), 보증신용장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54) 수익자 를 위하여 서명하는자의 서명 및 권한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55) 또한 양도 실행에 따른 수수료을 부과할 수 있으며56) 이외에 기타합리적인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도 있다.57)

3) 필요서류에 대한 양도의 효력

보증신용장이 양도되면 권리의 주체가 제1수익자에서 제2수익자로 이전되기 때문에 ISP98 제6.04조58)에서는 이에 따른 지급청구서 및 기타서류의 명의 서

verific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person signing for the beneficiary; (v) payment of the transfer fee; and (vi) any other reasonable requirements.

⁵²⁾ 개설인이나 지정인은 보증신용장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첫째, 그 보증신용장 원본 에 지급청구권양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둘째, 그 보증신용장 원본을 회수하고 새로이 보증신용장을 발행하고 원보증신용장(원본)에는 '취소됨'으로 표시한다. 이 중에서 후자 의 방법이 전형적이며, 이때 보증신용장 원본의 이면에 보증신용장양도의 사실이 표시된 다(대한상공회의소, 상게서, p.183).

⁵³⁾ 제6.03조 (b)항 (i)호

⁵⁴⁾ 제6.03조 (b)항 (ii)호

⁵⁵⁾ 제6.03조 (b)항 (iii)호 및 (iv)호

⁵⁶⁾ 제6.03조 (b)항 (v)호

⁵⁷⁾ 제6.03조 (b)항 (vi)호

⁵⁸⁾ ISP98 제6.04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ere there has been a transfer of drawing rights in their entirety: (a) a draft or demand must be signed by the transferee beneficiary; and (b) the name of the transferee beneficiary may be used in place of the name of the transferor beneficiary in any other required document.'

명자의 대체를 규정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보증신용장이 양도되었다면 환어음 이나 청구서는 양수수익자(제2수익자)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하고.59) 기타 모든 필요서류에서 얏도수익자(제1수익자)의 명의 대신에 얏수수익자(제2수익자)의 명의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0) 즉 화어음이나 지급청구서에서 양 도수익자인 제1수익자의 서명을 요건으로 부과하고 있는 보증신용장이 양도되 었다면, 이제는 제2수익자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서명은 제2수익자 가 하여야 한다. 이는 제1수익자가 더 이상 지급청구권을 갖지 않는 이유에 기인한다. 또한 이외의 기타서류에서 제1수익자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 신 이를 제2수익자의 명의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61)

4) 보증신용장양도에 따른 지급에 대한 상환

ISP98 제6.05조에서는 개설인이나 지정인이 갖는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다루 면서, '제6.03조 (a)항, (b)항 (i)호 및 (b)항 (ii)호를 준수한 양도에 따라 지급 한 개설인이나 지정인은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환청구권을 갖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인이나 지정인은 진정한 양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야 비로소 상화청구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ISP98에서는 진정한 양수수 익자(제2수익자)로 보이는 자에게 지급하고 그 진위의 확인을 위하여 주의의 무를 다하였다면, 개설인이나 지정인에게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정인은 첫째, 보증신용장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양수수 익자에게 지급하고(제6.03조 (a)항). 둘째. 양도실행일. 양수수익자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하는 서명된 양도요청서를 받고.62) 셋째, 보증신용장 원본의 제출 을 요구하였다면⁽³⁾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이러한 규정은 제1수익자의 실제대 리인이나 표견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보증신용장양도의 위험을 개설의뢰인에게 전가시킨다. 그러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보증신용장의 양도위험은 전가되

⁵⁹⁾ 제6.04조 (a)항

⁶⁰⁾ 제6.04조 (b)항

⁶¹⁾ 그러나 이는 제1수익자(양도수익자)나 제2수익자(양수수익자)의 명의 중에서 선택하여 표 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제2수익자의 명의를 표시해야하는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⁶²⁾ 제6.03조 (b)항 (i)호

⁶³⁾ 제6.03조 (b)항 (ii)호

지 않는다.64)

2. 비교 및 평가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가능보증신용장은 그 사용 용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갖는 성질과 특징이 다르다.65) 따라서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도가능 문언의 명시

UCP600의 경우 반드시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신용 장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신용 장은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보증신용장상 양도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양도가능한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 ISP98과 동일하다. 이는 신용장이 양도되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자가 양수인(제2수익자)으로 변경되어 개설의뢰인에게 초래되는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 당시에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양도가능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어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도에 따른 개설의뢰인에게 초래되는 위험의 증가라는 점에서는 보증신용장 또한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양도의 허용 횟수 및 분할양도

UCP600과 ISP98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양도의 허용 횟수와 분할양 도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UCP600에서는 오로지 양도를 1회만 허용60하고

⁶⁴⁾ 대한상공회의소, 전게서, p.185.

⁶⁵⁾ 보증신용장은 상업신용장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의무를 은행의 의무로 대체하는 것이다. 주된 차이점은 상업신용장은 기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청구를 하지 만, 보증신용장에서는 기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급청구를 하며, 만약 기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업신용장은 매매계약 또는 서비스계약에서 1차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보증신용장은 1차적인 채무가 불이행될 때 2차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대한상공회의소, 상게서, p.12).

⁶⁶⁾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이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면서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있음에 반해 ISP98에서는 전양도를 허용하여 보증신용장이 2회 이상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용장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제2수익자)에게 지급청구권뿐만 아니라 물품의 선적 및 선적서류의 제시 등을 이행할 의무가 이전되기 때문에 전양도를 금지하고 대신 반화양도(transfer back)를 함으로써 개설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보증신용장양도의 경우에는 지급청구서를 포함 한 여타 필요서류를 제시할 의무만 이전되기 때문에 전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UCP600에서는 원칙적으로 분할양도를 허용하고 있어 다수의 제2수익 자가 존재할 수 있으나. ISP98에서는 일부양도(분할양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의 일부양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신 용장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양도은행(지정인)의 의무

신용장은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같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약정만으로 양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배서와 같은 행위를 통해 신용장의 급부권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수권받은 양도은행을 통해 양도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보 증신용장도 신용장이므로 그 양도에 관하여는 개설인(확인인 포함)이나 지정인 을 특정하고 반드시 그 지정인을 통해 양도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 일하다. 따라서 양도인은 우선 양도은행에 양도요청을 하여야하고. 양도은행은 양도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양도은행은 자신이 동의한 범위와 방법을 초과하여 양도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익자의 양도요청을 거절할 수 있 는데,⁶⁷⁾ 이러한 점에서 UCP600과 ISP98 양자는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필요서류상 명의의 대체

UCP600와 ISP98은 모두 필요서류상 사용되는 명의를 타 명의로 대체할 수

양도가능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김기선·김영훈, "신용장양도에 관한 고찰", 「지역발전연구」제5권, 한국지역발전학회, 2005, p.208.

⁶⁷⁾ 그러나 이는 지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개설은행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만약 지정은행이 양도를 거절했다면, 개설은행은 양도절차를 행해야만 할 것이다(김기선외, 전게논문, p.212).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CP에서는 개설의뢰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의 명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ISP98에서는 양도수익자(제1수익자)의 명의를 보증신용장을 양수받는 양수수익자의 명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사용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UCP600에서는 추후에 제1수익자를 배제하고 개설의뢰인과 양수수익자인 제2수익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고, ISP98은 보증신용장의 권리주체가 바뀜에 따라서 명의의 대체가 필요할 경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법의 작용에 의한 양도

ISP98에서는 UCP600에는 없는 법의 작용에 의한 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증신용장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가 아닌 회사의 인수 · 합병, 도산절차의 진행, 사망이나 능력상실, 상호변경 등⁽⁸⁾의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ISP98에서는 이러한 법의 작용에 의한 승계가 있는 경우에 그 법적 승계인이 마치 권한 있는 양수수익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명의로 지급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증신용장에서 명시한 필요서류이외의 서류로서 문면상 승계의 사실을 표시하는 추가서류⁽⁹⁾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⁷⁽⁰⁾

V. 결 론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가능보증신용장은 사용 목적과 용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과 특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

⁶⁸⁾ ISP98 제6.12조 참조.

⁶⁹⁾ 승계를 입증하는 추가서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대표(사법공무원 포함)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이어야 한다(ISP98 제6,12조).

⁷⁰⁾ 대한상공회의소, 전게서, p.193.

기는 하지만,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가능보증신용장은 모두 신용장이라는 점에 서 동일한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며 UCP가 대표적인 보증신용장거래의 준거규 칙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양자를 비교해볼만한 가치가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신용장양도의 법리를 고찰한 후, 보증신용장양도 와 비교 및 평가하여 실무상 유의점들을 지적해보았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양자는 모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어야만 양도가 가능하고, 이 러한 문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하다는 점, 개설인이나 지정인 (UCP상 양도은행)이 수익자의 양도요청에 동의하고 그 양도를 실행하여야 양 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ISP98에서는 일부양도(UCP상 분할양도)를 허용하지만 UCP는 일부양 도를 허용하지 않는 점, ISP는 2회 이상의 전양도를 허용하지만 UCP는 오로지 1회의 양도만이 허용되고 전양도는 금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ISP 에서는 환어음이나 청구서, 이외의 기타 필요서류에 제1수익자 명의를 제2수익 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이에 무역실무자들은 보증신용장의 태생적 성질을 감안하여 보증신용장의 준 거규칙으로 UCP600이 아닌 ISP98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일 보증신용장에 UCP60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와 같이 그 적용이 부적절 한 조항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 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7.
- 김기선·김영훈, "신용장양도에 관한 고찰", 「지역발전연구」제5권, 한국지역발 전학회, 2005.
- 김영준, "신용장양도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1999
- 김중년. "보증신용장거래에 대한 준거규칙으로서의 ISP98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대한상공회의소, 「ISP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 2008.
- 서백현, "신용장통일규칙 양도조항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6호, 한국무역학회, 2004.
- 서정두, 「UCP600 신용장 분쟁사례」, 청목출판사, 2009.
- 우성구, "UCP에 의거한 신용장양도원칙의 실무적용사례", 「산업경영」 제22 권,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8.
- 이상훈. "신용장양도에 있어서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 구", 「국제상학」제21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울출판사, 2007.
- .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양도조항에 관한 고찰". 「창업정보학회지」제7 권 제2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4.
- Chapman, Jr., Cornelius J., "The 1983 Revision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George Washing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Vol.28, 1995.
- Davis, A. G.,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 of Credit, Sir Issac Pitman Ltd., 1963.
- Peter Ellinger,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 Wilber Ward & Henry Harfield,, Bank Credit and Acceptance, 4th ed, New York; Ronald Press. 1958.

_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in the UCP600

- Focusing on Comparing with Transfer of drawing rights in the ISP98 -

Park, Se Hoon Choi, Young Joo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A transferable credit is a credit that clearly specifies it is 'transferable' and may be made available in whole or in part to second beneficiary by the request of the first beneficiary, the transfer of the credit is available where the seller as a middleman in intermediate trades purchase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ppli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in the UCP600. Having recognized the differences, the study analyzes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under the UCP600 in comparison to those under the ISP98. The ISP98, like the UCP600, stipulates for the requirement of transfer, the number of transfer, conditions of transfer, the replacement of the name of first beneficiary.

Key Words: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transferable L/C, transfer of drawing rights,